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A way to estimating the benefit of parking cost savings in the rail investment appraisal

장 수 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동북아 교통연구실
책임연구원 justin@koti.re.kr

정 규 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동북아 교통연구실
연구원 normalj@koti.re.kr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 방법론 검토
Ⅲ.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정립
1. 주차비용 원단위 산정
2.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Ⅵ. 부록 : 단위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

Ⅰ. 서론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대책'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행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에 따라 수행한다.

한편, 타당성 조사는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건설 기술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자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기본구상 후 수행한다. 타당성조사는 사업비 100억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항목 및 방법론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 지침(건설교통부, 2004)'에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시행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경제성 분석은 특정 사업의 국민 경제적 차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를 상호 비교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특정 편익 및 비용 항목의 포함여부와 추정방법에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사업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곧 편익과 비용 항목의 꾸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차비용 절감 편익은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특수 편익 항목 중 하나이다. 철도 투자사업의 결과로 승용차에서 철도로 수요의 전환이 일어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주차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 때 승용차 보유의 감소는 주거지역의 주차 수

요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통행의 감소는 비주거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소시킨다. 철도사업으로 자동차 보유 자체를 감소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동차 통행 감소에 따른 편익은 계상할 수 있다. 감소된 주차수요는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원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절감된 자원의 기회비용을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단, 지역 간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역 주차장을 건설·운영하므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은 도시부 철도(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사업에 한정하여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주차비용 절감 편익은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법론은 관련 자료 구축 미비 등의 이유로 이전(transfer) 비용인 주차요금 절감액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대체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타당성조사에서는 관련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비용을 구성하는 자원을 체계화하고 각 자원의 기회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해 적절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을 정립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이 재정립되어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신중한 투자정책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기존 방법론 검토

본 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을 검토한다. 이 항목은 타당성조사의 평가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특수 편익으로 고려하고 있다.

철도투자 사업의 결과로 승용차의 주차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기 건설된 주차장 또한 주차장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이러한 여유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의 기회비용을 산정해야하나, 관련 자료 구득의 한계로 주차요금 절감액으로 대체 추산하고 있다. 즉, 통행목적별 평균주차시간과 해당 지역의 평균주차요금을 곱하여 사업시행 전·후 총 주차요금의 변화를 편익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요금은 명백히 이전비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차비용을 구성하는 자원 항목을 체계화하고 개별항목별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원단위를 산정하여 주차비용 산정 방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차비용을 구성하는 자원은 용지비, 건설비 및 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충실하게 주차비용을 추정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차비용 산정(예)

구분	용지비 ($/면)	건설비 ($/면)	운영비 ($/면,연)
Suburban, On-Street	200	2,000	200
Suburban, Surface, Free Land	0	2,000	200
Suburban, Surface	455	2,000	200
Suburban, 2-Level Structure	227	10,000	300
Urban, On-Street	1,000	3,000	200
Urban, Surface	2,083	3,000	300
Urban, 3-Level Structure	694	12,000	400
Urban, Underground	0	20,000	400
CBD, On-Street	8,000	3,000	300
CBD, Surface	15,385	3,000	300
CBD, 4-Level Structure	3,846	15,000	400
CBD, Underground	0	25,000	500

자료: Parking Evaluation,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2003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부합되는 주차비용 원단위 및 산정방안을 제시토록 한다(III 참조).

III.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정립

본 장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을 용지비, 건설비 및 운영비로 구분하고 관련 자료 구축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 주차비용 원단위 및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1. 주차비용 원단위 산정

용지비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로 추정한다. 주차장이 위치하는 토지는 이용 특성에 따라 지가에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원단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차장은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용지비가 소요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단위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부록의 <표 6> 참조)를 고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용지비를 추정한다. 대도시지역은 단일한 원단위로 추정 가능하지만 지역 내 개발밀도의 편차가 심하거나 보존녹지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방부에서는 도심부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원단위를 산출하였다. 이 원단위를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1면당 평균면적(13.25㎡)(도철웅, 2004)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비는 2000년 이후 서울시의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주택가 입체식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1면당 평균 건설비를 적용한다(<표 3> 참조). 건설비는 토지의 형태,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접근도로의 확보여부, 지역 특성, 동일 면적에 설치되는 주차면수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 용지매입비는 없지만 굴착에 따른 토공사비, 가(假)시설 설치비, 환기시설 및 방수공사비, 지장요소(전기, 통신, 하수) 이설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지상 및 입체식 주차장에 비해 높은 건설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서울시 공공무문에서 시행된 주차장 건설사업(36건) 중 지하식 주차장을 제외한 사업의 1면당 평균 건설비를 원단위로 산정한다. 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표 2> 권역별 주차장 건설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도심(종로,중구)			강 북 권			강 남 권		
	주거지역	학교지하	공원지하	주거지역	학교지하	공원지하	주거지역	학교지하	공원지하
주차면수	0	100	197	1,297	525	399	624	829	0
1면당 평균 건설비	0	35	39	20	33	34	30	29	0

자료: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에 따른 건설비 소요예산 비교분석 보고, 서울시 내부자료, 2006

<표 3> 토지이용 특성별 주차장 건설비 비교

단위: 면, 백만원

구 분	주택가 공동주차장[1]	학교 지하주차장[2]	공원 지하주차장[2]
주차면수	1,921	1,454	596
1면당 평균건설비	20	31	35

주: 1. 주택가 공동주차장 : 2005년도 준공사업 21개소
2. 학교, 공원지하주차장 : 2001년-2005년도 준공된 15개소 사업(학교 10, 공원 5)
자료: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에 따른 건설비 소요예산 비교분석 보고, 서울시 내부자료, 2006

운영비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한 2005-2006년의 예산편성자료를 평균하여 주차장 1면당 운영비를 계산하였다. 공영주차장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제경비를 포함한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주차장 6개소(2,174면)의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를 합산하여 1면당 주차장 운영비용의 원단위를 산출하였다(<표 4> 참조).

<표 4> 서울시 공영 주차장 운영비

단위: 천원/연

구 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2005-2006 평균비용	1면당 평균비용
직접관리비	인건비	1,702,324	1,435,259	1,568,792	721.62
	제경비	1,159,676	1,424,741	1,292,209	425.58
	소계	2,862,000	2,860,000	2,861,001	131.60
간접관리비		322,000	290,000	306,000	140.75
계		3,184,000	3,150,000	3,167,001	1,456.76

자료: 서울시설관리공단 내부자료

또한 주차장의 회전률을 고려하기 위하여 서울시설관리공간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6개소의 2006년 평균주차시간을 산정하였다. 차종을 경차와 일반차량으로 구분하여 총 주차대수와 총 주차시간을 구한 후 차량대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주차장별 평균 주차시간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차시간의 원단위를 산출하였다(<표 5>참조).

<표 5>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평균주차시간

단위: 대, 시

공영 주차장	경차			일반차량			평균 주차 시간[1]
	총 주차 시간	총 주차 대수	평균 주차 시간	총 주차 시간	총 주차 대수	평균 주차 시간	
창동	1,322	325	4.1	14,526	4,516	3.2	3.3
잠실	757	237	3.2	7,027	2,389	2.9	3.0
구로 디지털 단지	664	184	3.6	6,728	2,314	2.9	3.0
개화산	815	129	6.3	6,168	1,364	4.5	4.7
수서	1,730	460	3.8	26,047	7,422	3.5	3.5
도봉산	4,323	486	8.9	23,039	3,686	6.3	6.6
평균주차시간 원단위[2]							4.0

주: 1. 차종별 평균주차시간을 총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계산
2. 6개소 공영주차장의 평균주차시간을 단순 평균
자료: 서울시설관리공단 내부자료

2.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주차비용 세부항목의 원단위를 토대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주차비용은 용지비와 건설비 그리고 운영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비용 절감분을 편익으로 계상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본가정(한국개발연구원, 2004; p. 217)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첫째, 철도이용의 증가가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율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주거지 주차장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자가용 이용목적 중 업무, 통근, 쇼핑통행만이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주차 회전률을 고려하여 평균주차시간을 편익산정 시 적용한다.

$$VOPS = VOP_{\text{사업미시행}} - VOP_{\text{사업시행}}$$

$$VOP = \left\{ \frac{1}{2} \times \frac{T_{du}}{24} \times \sum_{o} \sum_{d} \sum_{p=1}^{3} D_{od}^{p} \times (13.25 C_{la} + C_{con}) \right\} + \left\{ \frac{1}{2} \times \frac{T_{du}}{24} \times \sum_{o} \sum_{d} \sum_{p=1}^{3} \sum_{Y} D_{od}^{p} \times C_{op}^{Y} \right\}$$

여기서, VOP는 주차비용, D_{od}^{p}는 통행목적별 특정 OD간 승용차 통행량, C_{la}는 주차 1면당 평균 용지비(원/㎡), C_{con}은 주차 1면당 평균 건설비(원/㎡), C_{op}^{Y}는 Y년도의 주차 1면당 평균 운영비(원/면-연), p는 통행목적(1: 업무, 2: 통근, 3: 쇼핑), T_{du}는 평균주차시간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부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정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을 검토하여 현행 산정방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문제점은 이전비용인 주차요금의 감소분으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을 대체 추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비용과 관련된 자원을 용지비, 건설비 및 운영비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원단위를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철도(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신중한 SOC 투자 의사결정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으나 관련 자료의 미비 등으로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 먼저 주차장 건설비 원단위를 추정할 때 관련 자료 구축의 미비로 입체식 주차장의 건설비만을 참고하였지만, (가칭) 표준적 주차장 건설비용 산정 연구 등의 과제가 수행된다면 입체식, 지하식, 평면식 등의 주차장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신뢰성 높은 건설비 원단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비를 산정할 때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공영 노외주차장의 자료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별 민·관 주차장의 운영비 자료가 확보되고 비교·분석된다면 이러한 위험요소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이러한 추가 과제가 수행된다면 보다 진일보된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대책, 1999.
2. 건설교통부,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평가편람, 2004.
3. 도철웅, 교통공학원론(상) 제2개정판,

청문각, 2004.
4.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에 따른 건설비 소요예산 비교분석 보고 (내부자료), 2006.
5.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
6.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Parking Evaluation, 2003.

VI. 부록 : 단위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

<표 6> 지역별 단위 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2006년 기준)

단위: 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	
종로구	3,300,000	수원시	691,000	파주시	237,000
중구	6,380,000	성남시	1,670,000	(비도심)	9,000
용산구	2,910,000	의정부시	755,000	이천시	128,000
성동구	2,440,000	안양시	1,450,000	(비도심)	28,300
광진구	2,250,000	부천시	1,276,000	안성시	159,000
동대문구	2,280,000	광명시	1,530,000	(비도심)	33,000
중랑구	1,660,000	평택시	257,000	김포시	375,000
성북구	1,870,000	(비도심)	8,000	(비도심)	123,000
강북구	1,620,000	동두천시	124,000	화성시	271,000
도봉구	1,710,000	(비도심)	28,900	(비도심)	71,900
노원구	1,740,000	안산시	372,000	광주시	292,000
은평구	1,680,000	고양시	1,320,000	(비도심)	108,000
서대문구	2,070,000	(비도심)	354,000	양주시	281,000
마포구	2,590,000	과천시	2,290,000	(비도심)	109,000
양천구	2,300,000	구리시	1,250,000	포천시	145,000
강서구	1,680,000	남양주시	464,000	(비도심)	5,800
구로구	1,900,000	(비도심)	9,900	여주군	9,400
금천구	1,700,000	오산시	356,000	(비도심)	3,400
영등포구	2,730,000	시흥시	617,400	연천군	46,200
동작구	2,110,000	(비도심)	90,000	(비도심)	10,900
관악구	2,150,000	군포시	1,240,000	가평군	24,800
서초구	4,640,000	의왕시	111,000	(비도심)	17,500
강남구	6,310,000	하남시	1,674,000	양평군	365,000
송파구	4,040,000	용인시	355,500	(비도심)	47,300
강동구	2,910,000	(비도심)	44,300		

<표 계속> 지역별 단위 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2006년 기준)

단위: 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중구	251,000	달서구	597,000	영월(비도심)	3,090
동구	572,000	달성군	96,000	평창군	60,700
남구	791,000	(비도심)	32,600	(비도심)	4,220
연수구	828,000	부산광역시		정선군	23,200
남동구	811,000	중구	2,060,000	(비도심)	1,700
부평구	895,000	서구	456,000	철원군	37,100
계양구	840,000	동구	888,000	(비도심)	3,890
서구	364,000	영도구	362,000	화천군	24,450
(비도심)	68,000	부산진구	843,000	(비도심)	2,660
강화군	73,200	동래구	748,000	양구군	106,100
(비도심)	32,600	남구	507,000	(비도심)	1,900
옹진군	13,000	북구	472,000	인제군	43,300
광주광역시		해운대구	774,000	(비도심)	4,820
동구	681,000	사하구	359,000	고성군	65,500
서구	448,000	금정구	713,000	(비도심)	9,700
남구	324,000	강서구	1,680,000	양양군	44,000
북구	344,000	연제구	786,000	(비도심)	6,740
광산구	190,000	수영구	751,000	충청북도	
(비도심)	11,000	사상구	435,000	청주시	198,000
대전광역시		기장군	114,000	충주시	63,066
서구	741,000	강원도		(비도심)	7,511
(비도심)	34,500	춘천시	79,400	제천시	61,200
유성구	395,000	(비도심)	5,960	(비도심)	4,950
대덕구	366,000	원주시	40,000	청원군	86,300
울산광역시		(비도심)	12,400	(비도심)	21,500
중구	477,000	강릉시	98,400	보은군	52,400
남구	266,000	(비도심)	8,160	(비도심)	4,510
동구	249,000	동해시	18,200	옥천군	43,200
북구	81,000	(비도심)	10,100	(비도심)	5,660
(비도심)	11,400	태백시	19,900	영동군	26,100
울주군	68,500	(비도심)	4,110	(비도심)	2,630
(비도심)	8,740	속초시	26,041	증평군	93,000
대구광역시		삼척시	22,100	(비도심)	11,500
중구	1,370,000	(비도심)	3,490	진천군	84,100
동구	380,000	홍천군	25,400	(비도심)	13,300
서구	5,490,000	(비도심)	7,110	괴산군	44,700
남구	6,090,000	횡성군	101,000	(비도심)	5,530
북구	552,000	(비도심)	4,760	음성군	86,240
수성구	847,000	영월군	34,200	(비도심)	12,992

<표 계속> 지역별 단위 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2006년 기준)

단위: 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단양군	12,600	익산시	104,000	구례(비도심)	4,005
(비도심)	4,000	(비도심)	8,360	고흥군	23,200
충청남도		정읍시	47,200	(비도심)	2,420
천안시	216,000	(비도심)	4,660	보성군	18,100
(비도심)	35,100	남원시	72,800	(비도심)	3,260
공주시	84,900	(비도심)	3,330	화순군	40,700
(비도심)	13,600	김제시	40,400	(비도심)	5,260
보령시	106,000	(비도심)	7,160	장흥군	12,300
(비도심)	15,300	완주군	29,300	(비도심)	1,460
아산시	150,000	(비도심)	8,860	강진군	28,700
(비도심)	34,500	진안군	22,100	(비도심)	1,660
서산시	49,700	(비도심)	2,230	해남군	35,900
(비도심)	10,300	무주군	32,500	(비도심)	4,400
논산시	58,700	(비도심)	3,510	영암군	46,016
(비도심)	11,800	장수군	37,000	(비도심)	4,580
계룡시	86,600	(비도심)	1,510	무안군	78,302
금산군	66,900	임실군	16,500	(비도심)	8,029
(비도심)	7,070	(비도심)	3,850	함평군	19,309
연기군	152,000	순창군	24,600	(비도심)	4,138
(비도심)	27,700	(비도심)	2,070	영광군	13,500
부여군	46,100	고창군	19,200	(비도심)	3,010
(비도심)	6,670	(비도심)	3,840	장성군	31,558
서천군	75,000	부안군	27,800	(비도심)	4,286
(비도심)	8,000	(비도심)	7,270	완두군	18,700
청양군	74,600	전라남도		(비도심)	3,770
(비도심)	4,820	목포시	187,000	진도군	14,075
홍성군	77,300	여수시	36,971	(비도심)	3,028
(비도심)	5,680	(비도심)	3,627	신안군	섬마다 다름
예산군	48,000	순천시	44,600	경상북도	
(비도심)	10,300	(비도심)	4,110	포항시	72,200
태안군	70,900	나주시	39,700	(비도심)	8,530
(비도심)	15,400	(비도심)	6,370	경주시	43,500
당진군	103,000	광양시	46,900	(비도심)	9,740
(비도심)	21,100	(비도심)	4,130	김천시	80,500
전라북도		담양군	58,400	(비도심)	7,110
전주시	148,000	(비도심)	6,910	안동시	66,400
(비도심)	23,200	곡성군	29,075	(비도심)	3,380
군산시	93,000	(비도심)	3,214	구미시	94,300
(비도심)	10,800	구례군	41,716	(비도심)	7,710

<표 계속> 지역별 단위 면적당 평균 개별공시지가(2006년 기준)

단위: 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지역	금액(원)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영주시	56,900	칠곡군	48,200	거제시	73,700
(비도심)	3,430	(비도심)	16,500	(비도심)	16,300
영천시	63,700	예천군	37,000	양산시	97,500
(비도심)	6,690	(비도심)	1,950	(비도심)	9,210
상주시	34,500	봉화군	17,900	의령군	25,800
(비도심)	3,300	(비도심)	2,090	(비도심)	2,850
문경시	34,500	울진군	22,700	함안군	70,200
(비도심)	3,300	(비도심)	3,040	(비도심)	11,700
경산시	109,000	울릉군	17,100	창녕군	30,900
(비도심)	19,100	(비도심)	7,080	(비도심)	5,500
군위군	37,300	경상남도		고성군	62,600
(비도심)	4,990	창원시	357,000	(비도심)	6,000
의성군	21,300	(비도심)	19,000	남해군	39,300
(비도심)	2,630	마산시	355,000	(비도심)	6,260
청송군	38,590	(비도심)	19,300	하동군	81,300
(비도심)	2,084	진주시	105,000	(비도심)	3,760
영양군	14,400	(비도심)	7,330	산청군	79,600
(비도심)	1,130	진해시	176,000	(비도심)	4,190
영덕군	32,100	통영시	101,000	함양군	40,800
(비도심)	3,600	(비도심)	6,400	(비도심)	3,250
청도군	24,700	사천시	33,400	거창군	54,400
(비도심)	7,570	(비도심)	12,300	(비도심)	2,590
고령군	89,400	김해시	169,000	합천군	32,900
(비도심)	10,300	(비도심)	31,500	(비도심)	2,290
성주군	76,000	밀양시	68,900	재주전지역	67,600
(비도심)	7,860	(비도심)	11,500	(비도심)	8,080

자료 : 각급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공고 자료